

瑞山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2000. 10.19

産業建設委員會

##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 2000. 10. 6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2000. 10. 9

라. 上程日字 : 2000. 10. 19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上下水道事業所長 文英燮)

### 가. 提案理由

- 하수도관련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생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규정 등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민원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함(안 제4조의2).

-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한 규정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4항의 단서규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 합류식관거 지역에서 이중 부담방지를 위하여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부과토록 함(안 제15조제2항제4호).
- 제20조(의무의 승계) 법 제34조의 삭제에 따라 조문내용을 삭제함.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하수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규정과 하수관리 청소 및 준설을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던 것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하여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폐수량 측정기로 설치할 경우에는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합류식관거 지역은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토록하여 원인자의 설치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의무승계 사항 삭제 등을 개정하여 이용자 편익증진에도모하였음.

- 표준하수도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서산시공고 제2000-239(2000.8.8)호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77 호
의결 년월일	2000. . . (제 회)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년 10월 6일

#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71 호
----------	---------

제출년월일 : 2000. 10. 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 개 정 이 유

'99. 8. 9 일 하수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현행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대한 개정 통보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그동안 조례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사항이 감사시마다 지적되어 이를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을 원활히 처리 하고자 하는것임.

## 2. 주 요 골 자

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  
(안제4조의2)

나.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한 내용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수관거준설지침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안제8조).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것임(안제12조제4항의 단서규정).

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합류식관거지역에서 이중 부담방지를 위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개정하려는것임(안제15조제2항제4호).

마. 하수도법제34조의 삭제에 따라, 조문내용을 삭제함.

## 3. 참 고 사 항

### 가. 관 련 법 령

하수도법제24조제2항, 제3항, 동법제32조제4항, 동법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건축법제18조제1항, 제2항,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제9조제1항, 동법제10조제1항 하수관거 유지관리 지침 (수질 67712-373, 99. 12. 6일)

나. 입법예고 결과의견 : 2000. 7. 20. ~ 8. 8.까지 공고한 결과 의견 없음.

##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5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중 “2년에 1회이상”을 “1년에 1회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1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4호중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시의 해당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 비용을 제외한 비용)또는 단독 정화조”로 단서조항 “제2항 제2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 20조(의무의 승계)법제34조의 삭제에 따라 조문내용을 삭제함.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 공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동 반)				
	관 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sup>3</sup> /일	※환경부 고시 제92-61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	검 사 항 목		1차검사 검사일자 ( . . . )	보완사항	2차 검사 검사일자 ( . . . )	비고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수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p>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준공검사신청서, 배수설비 시공도면, 배수설비 시공사진(전·중·후 대비)						